

# 신림선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

2022. 05. 28 기준

## 1. 여객의 구분 및 기본운임

구분	범위	기본운임	
		교통카드	1회권
일반 (어른)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	1,250원	선·후불교통카드 +100원
청소년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의 사람(외국인 포함)	720원	일반 1회권 교통카드 적용
어린이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단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450원	450원
유아	만6세미만의 사람	운임면제	운임면제

## 2.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기준(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적용)

도시철도만 이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운임 : 10Km까지 1,250원(1회권은 1,350원)</li> <li>추가운임 : 10 ~ 50Km 이내 : 5Km 마다 100원 추가</li> <li>50Km 초과구간 : 8Km 마다 100원 추가</li> <li>*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적용 후 수도권 외 구간(평택~신창, 가평~춘천)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li> </ul>
도시철도~버스환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적용</li> <li>- 서울광역시,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시(좌석)시내버스 : 30Km</li> <li>- 기타버스 기본거리 : 10Km</li> <li>- 상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 5Km 마다 추가운임 합산한 금액</li> <li>* 4회(5회 승차)까지 환승 가능(하차 후 30분 이내, 21시 ~ 익일 07시에는 1시간이내 승차시 적용)</li> <li>* 동일노선 버스 환승불가, 도시철도 하차 후 다시 도시철도 승차시 환승불가</li> </ul>

\* 조조할인제 : 첫차~06:30까지 승차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선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 다만,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 3. 정기권의 이용

정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객이 도시철도구간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li> <li>[서울전용] 55,000원(1,250원 × 44회)</li> <li>[거리비례용] 1~18단계(55,000 ~ 117,800원)</li> <li>- 1회 충전시 30일/60회 이내 사용(정기권카드 별매)</li> <li>* 유효기간 또는 잔여횟수 중 어느것이라도 선도래하면 사용만료</li> </ul>
-----	--

## 4. 무임(우대용 교통카드, 우대용 1회권 사용)

노인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li> <li>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li> <li>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li> </ul>

## 5. 승차권의 사용조건 및 효력

- 1인 1매의 승차권으로 사용(1매 승차권으로 다인 사용불가, 단, 단체권, 일부 특수권 제외)
- 여행도중 역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이때 잔여운임은 반환되지 않음.
- 여행도중 자동개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차로 간주되며,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함.
- 동일한 역에서 5분이내 최초승차▶하차▶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재승차시의 운임면제(단, 환승횟수는 1회 차감)
  - 대상 : 선후불교통카드, 정기권(1회용교통카드 제외)
  - 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여행도중 하차 하였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 제외
- 개표 후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오는 경우 자동개표기에서 집표처리하며, 개표시 지불된 운임은 반환하지 않음.
-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또는 1회권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

## 6. 승차권의 반환

-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 불가시 : 해당 승차권 운임 반환 (미승차 확인증 소지 고객의 경우 여행 중지일 포함 7일 이내 청구 시)
- 개표한 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 운임 반환
- 미사용 승차권 반환
  - 미사용 1회권 또는 미개표 1회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운임반환 청구(1회권 한)

## 7. 부가금 징수 기준

○ 다음의 경우에 승차구간의 여객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운임)과 30배의 부가금징수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승차구간의 운임만 징수)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
-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 개표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을 개표를 받지 않고 승차하였을 때
- 승차권 검사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여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무효

-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어른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청소년이 어린이권 및 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우대용 1회권, 청소년카드 및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때
- 기타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때
-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 ○ 부가금 징수시 세부사항

-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은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
-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
- 여객이 여행 시작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하지 않음.

## 8. 휴대금지(제한품) 안내

○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 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

구분	종류
위해물품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방사성물질, 부식성물질, 마취성물질, 총포·도검류 등 기타 유해물품
위해물품 이외의 휴대금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애완용 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겹포장을 하여 용기안이나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예외)</li> <li>불결, 악취 등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li> <li>전차선등에 접촉으로 안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li> </ol>
휴대품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음)</li> <li>자전거(접이식자전거 포함)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음.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하는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음)</li> </ol>

## 9. 여객운송의 거절 또는 퇴거 대상 행위

- 휴대금지품, 휴대제한품,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 역사 및 열차 내 설치된 비상정지버튼,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
- 승강장안전문이나 열차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이물질 등을 넣는 행위
-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 타고 내리거나 고의로 출입문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서 흡연, 광고물 부착 또는 배포,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오물을 버리는 행위
-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